

#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출판 윤리강령

## 서 문

한국유체기계학회는 펌프 및 수차, 송풍기 및 환기 시스템, 압축기, 가스/스팀터빈, 배관설비, 환경기계, 회전체동역학, 선박/해양에너지, 생활폐기물 관로이송 설비, CFD, 유체공학일반 등 각 분야에 걸친 산학연 기술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유체공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활용하여 국내 유체기계 산업 및 연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. 본 학회는 유체기계 연구개발 종사자간의 관심 분야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1년에 6번 격월간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.

본 연구윤리강령은 한국유체기계학회 학회지의 높은 윤리적 수준을 유지하여 유체기계 관련 학계 및 산업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에 관련하여 구성원, 즉 저자,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제정하였다. 한국유체기계학회 학회지의 모든 구성원들은 학회지 심사과 출판과정에서 공정성과 과학기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1. 논문 저자 윤리규정

투고 논문의 저자는 논문 작성과 제출에 있어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인이 투고한 연구 결과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한다.

- (1) 투고 논문의 저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인권존중, 생명윤리 준수, 생물 다양성 보존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2) 투고 논문의 내용은 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서 공학적 및 기술적으로 독창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, 연구 결과를 임의로 첨삭하거나, 날조 및 변조하지 않아야 한다.
- (3) 투고 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.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.
- (4)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.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,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하에 인용하여야 한다.
- (5) 저자는 투고 논문의 연구 내용과 관련이 깊거나,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 문헌은 상식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. 자신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6) 투고 논문의 내용 중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적인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(7)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참고문헌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용납되지 않는다.
- (8)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본 논문집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것은 부정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.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규정에 맞추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나, 이 경우에는 해당 발표논문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.

- (9) 투고 논문에서 공저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개념 및 설계 또는 자료의 획득,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를 포함해야 하며, 논문의 작성 및 개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최종본을 승인해야 한다. 또한, 논문의 정확성 또는 완결성에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논문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. 행정적,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 외적인 지원이나 연구 자료 제공 또는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'후기 (acknowledgement)'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10) 투고 논문의 연구에 대해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에 포함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로 허용되지 아니한다.
- (11)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,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. 저자 소속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.
- (12)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논문의 출판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13) 투고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저자는 학회에서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또한, 투고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,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- (14) 논문 투고 후 발견된 실수에 대하여 저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하여야 한다.

## 2. 심사위원 윤리규정

심사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.

- (1)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의 성별, 나이, 인종, 소속 기관 또는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 논문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.
- (2)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3)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.
- (4)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.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은 자제하고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자세로 객관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(5)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상 중요한 기존 연구들이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,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고,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.
- (6) 심사위원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 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.
- (7)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 분야가 투고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거부할 의무를 가지며, 이 경우 담당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.

### 3. 편집위원 윤리규정

편집위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심사위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(1) 편집위원은 학회지 출판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,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 출판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위를 갖는다.
- (2)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의 성별, 나이, 인종, 소속 기관 또는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 논문에 대한 판정 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(3)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재심 여부나 게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, 판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- (4)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연구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부족하여 심사 결과를 판정하는데 곤란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(5) 편집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(6)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 및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, 부당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부당행위가 적발되거나 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조사 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.
- (7)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의 논문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심사를 거부할 의무를 가지며, 이 경우 편집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.

### 4. 윤리규정 시행 지침

- (1)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두며,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- (2)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,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- (3)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.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.
- (4)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(5)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,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,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,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.
- (6) 위에 기술된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. 다만, 본 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을 준용하여 결정한다.